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복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31일
발 의 자: 신복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 석, 신동원, 유정인,
윤기섭,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자연장의 정의가 확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에서 자연장의 방법을 확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자연장의 방법을 '확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 자연장의 방법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을 포함하도록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자연장을”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는 방식으로 자연장을”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골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장”을 “골분을 묻는 방식의 자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¹⁾을 반영하여 법률과 조례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각종 자료 등을 검토결과²⁾ 별도의 비용수반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4.]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2) 골분을 뿌리는 자연장을 하는 경우 물을 뿌려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